

2018년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

출처 :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- ◎ 지급 대상 기간 : 2017년 11월 1일 ~ 2018년 10월 31일
- ◎ 지급 : 2018년 12월
- ◎ 신청자격 :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의 HACCP 농장인증과 「친환경농어업법」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 ·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 - 제외대상
 - 「농어업 경영체법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법인
 -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축산물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 - 2020년 1월 1일부터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증 받은 농업인 및 법인
- ◎ 지원내용
 - 지원금액 : 친환경축산물 생산 · 판매실적 × 축종별 지급단가
 - 농가당 연간 지원한도 : (유기) 3천만원 / (무항생제) 2천만원
 - 축종별 지급단가

구분	유기축산물	무항생제축산물	비고
한우	170,000원/마리	65,000원/마리	육우는 한우의 50%
젖소(우유)	50원/L	10원/L	우유 1L는 1.03kg
돼지	16,000원/마리	6,000원/마리	
산란계(계란)	10원/개	1원/개	
육계	200원/마리	60원/마리	토종닭은 30% 증액
오리	400원/마리	120원/마리	
오리알	20원/개	2원/개	
머추리알	-	4원/10개 혹은 4원/100g	
산양	-	4,584원/마리	
산양유	-	34원/L	

- ◎ 필요서류 : 신청서 + 친환경축산물 인증서(사본) + HACCP 인증서(사본)
 -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인증취소, 인증기간 종료 등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-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경기지원(안양) 031) 455-5515 | • 강원지원(춘천) 033) 254-3401 | • 충북지원(청주) 043) 279-4152 |
| • 충남지원(대전) 042) 256-9463 | • 전북지원(전주) 063) 243-9514 | • 전남지원(광주) 062) 970-6239 |
| • 경북지원(대구) 053) 327-0701 | • 경남지원(창원) 055) 275-2819 | • 제주지원(제주) 064) 728-5251 |